



부산남구공보

제 1241호 2023.8.1.(화)



World EXPO 2030
BUSAN, KOREA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

발행·편집 / 부산광역시 남구
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
(48452)
☎ 607-4068 / FAX 607-4919

공 고

▶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-997호

[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

..... 2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-997호

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7월 31일

부산광역시 남구청장

1. 조례명

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

2. 개정이유

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이 폐지되고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3조제3호, 제4조제3항)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
나.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0조)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4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23년 8월 21일까지**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(참조: 건축과장)에게
제출하거나 전화(607-4616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

- 주 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(대연동)
부산광역시 남구청장(참조 : 건축과장)
- 이메일 : cloudybar@korea.kr
- 전 화 : 051-607-4616 (Fax 051-607-4589)

붙 임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
부개정 조례안. 끝.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
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개정이유

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2023.12.31.로 만료되는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
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조례에 명시하여 특별회계 관리운용
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「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이 폐지되고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
관리규정」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3조제3호, 제4조제3항)
나.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0조)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3. 주요토의과제 : 해당사항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2) 입법예고: 실시예정(20일 이상)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예정
- 5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6) 규제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
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

**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”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”을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”으로 하고 “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이 회계”라 한다)”를 “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 회계”를 “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이 회계”라 한다)”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”을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 중 “국민주택기금등”을 “주택도시기금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국민주택기금등”을 “주택도시기금 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2023년”을 “2028년”으로 하고 “특별회계”를 “이 회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”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이 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----- ----- ----- ---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세입)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 1. 법 ----- ----- 2. (생 략) 3. 국민주택기금등----- ----- 4.~ 7. (생 략)	제3조(세입)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이 회계”라 한다)----- ----- 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주택도시기금 등----- ----- 4.~ 7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세출) (생 략) 1.~ 2. (생 략) 3.----국민주택기금등-----	제4조(세출) (현행과 같음) 1.~ 2. (현행과 같음) 3.----주택도시기금 등-----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
4. ~ 6. (생략) 제10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4. ~ 6. (현행과 같음) 제10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<u>이 회계-----2028년-----</u> .
--	---